
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
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영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13.

발의자 : 송영길·박찬대·유동수

전혜숙·정성호·정세균

조배숙·윤관석·원혜영

유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,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,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.

따라서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,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조제5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1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
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라 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시정명령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제17조(시정명령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5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5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